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주식회사 팜스코

제정 2015년 3월 27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법 제 393 조의 2, 제 542 조의 8 및 주식회사 팜스코(이하 “회사”라 한다) 정관 제 29 조에 근거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구성 및 권한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충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8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 권한)

-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권리를 갖는다. 단,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상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사외이사 후보 대상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 542 조의 6 제 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추천한 후보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주간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8 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관계인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 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3조 (간사)

-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회사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